

보목록을 작성한 후 일정장소 또는 공개장소에 비치하여 공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집행기관은 매반기마다 정보공개의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예외규정)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94년 5월 12일

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94년 5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94년 5월 16일(2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정과장 김충신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 직제가 지방 12200-1038('94. 4. 18)호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건소명칭 :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
- 직 제 : 1읍소 4개 33명
- 관할구역

보 건 소 명	현	개	정
원미구 보건소	• 원미구 심곡 1, 2, 3동, 원미 1, 2동, 춘의동, 도당동, 약대동 • 오정구 일원	원 미 구	일 원

보 건 소 명	현	개 정
소사구 보건소	• 소사구 일원 • 원미구 역곡 1, 2동, 소사동, 중동, 상동	소 사 구 일 원
오정구 보건소		오 정 구 일 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보건소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?	•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오정구 보건소의 신설은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67
의 결	94. 5. 17
년 월 일	(제28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5. 1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2. 개정사유

-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 직제가 지방 12200-1038('94. 4. 18)호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보건소 명칭 :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
 ○ 직 제 : 1사업소 4계 33명
 ○ 관 할 구 역

보 건 소 명	현	개 정
원미구 보건소	• 원미구 십곡 1, 2, 3동, 원미 1, 2동, 춘의동, 도당동, 약대동 • 오정구 일원	원 미 구 일 원
소사구 보건소	• 소사구 일원 • 원미구 역곡 1, 2동, 소사동, 중동, 상동	소 사 구 일 원
오정구 보건소		오 정 구 일 원

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“별표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건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부 천 시 원 미 구 보 건 소	부천시 원미구 십곡동 181	원미구 일원
부 천 시 소 사 구 보 건 소	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	소사구 일원
부 천 시 오 정 구 보 건 소	부천시 오정구	오정구 일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설치) 보건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“별표”와 같다.		제2조(설치) 보건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“별표”와 같다.	
[별표]		[별표]	
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		보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	
명	칭	위	치
관	할	구	역
부천시	부천시	원미구 심곡 1,	
원미구 보건소	원미구 심곡동	2, 3동, 원미 1, 2	
		동, 춘의동, 도당	
		동, 약대동, 오정	
		동 일원	
부천시	부천시	소사구 일원	
소사구 보건소	소사구 괴안동	원미구 역곡 1,	
		2동, 소사동, 중	
		동, 상동	
부천시	부천시	원미구 일원	
원미구 보건소	심곡동 181		
부천시	부천시 소사구	소사구 일원	
소사구 보건소	괴안동 72		
부천시	부천시 오정구	오정구 일원	
오정구 보건소			

부천시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94년 5월 6일

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94년 5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94년 5월 16일(2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